

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(정영길 의원 외 7인)

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정영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3. 8. 12.

발 의 자 : 정영길·곽광섭·권영만·
최학철·강영석·변우정·
한창화·정상진 의원
(8인)

찬 성 자 : 28인

1. 제정 이유

-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·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·시행,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안제5조)
- 나.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,안제7조,안제8조)
- 다. 향토음식, 향토음식명인, 향토음식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, 안제10조)
- 라. 향토음식명인, 향토음식점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: 「식품산업진흥법」

5. 관련부서 협의

○ 예산수반(비용추계서 작성) : 붙임

○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○ 법제심사 : 해당없음

○ 해당부서(농업기술원)의견

- 제4조 :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 및 한식세계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

→ (반영) : ⑥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·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향토음식”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.
2. “향토음식명인”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향토음식을 발굴·육성을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
2.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
3.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지원 등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 방안

4.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·조사
5.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
6.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·육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내용)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향토음식의 발굴·보전·개선·개발·보급
2. 향토음식의 연구·조사
3.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·홍보
4. 향토음식 관계 기관·단체의 육성
5.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
6.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향토음식 발굴·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
3. 향토음식 지정·취소에 관한 사항
4.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
5.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(구성과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2.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
3.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·단체의 장
4. 향토음식 요리전문가
5.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향토 음식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제8조(회의 및 수당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향토음식의 선정)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.

② 향토음식의 선정대상,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향토음식명인·향토음식점의 선정)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.

②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,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향토음식명인·향토음식점의 지원)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향토음식점에 한한다.

1. 음식점 시설 개·보수 및 용자 지원
2.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
3.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
4.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
5.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
6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2조(업무의 위탁)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향토음식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및 전문인력 양성
-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창업지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13년도 예산 확보상황에 맞춤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향토음식전문인력양성						
	○ 향토음식교육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	○ 교육관건립						
	○ 향토음식창업지원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250,000
	소계(a)	275,000	275,000	275,000	275,000	275,000	1,375,000
세출	○ 향토음식전문인력양성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○ 향토음식교육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	○ 교육관건립	500,000	500,000	500,000	500,000	500,000	2,500,000
	○ 향토음식창업지원	2,750,000	2,750,000	2,750,000	2,750,000	2,750,000	13,750,000
	소계(b)	3,575,000	3,575,000	3,575,000	3,575,000	3,575,000	17,875,000
□ 총 비용(a-b)		-3,300,000	-3,300,000	-3,300,000	-3,300,000	-3,300,000	-16,5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비		275,000	275,000	275,000	275,000	275,000	1,375,000
도비	일반회계	715,000	715,000	715,000	715,000	715,000	3,575,000
	○○특별회계						
	○○기금						
시·군비		1,860,000	1,860,000	1,860,000	1,860,000	1,860,000	9,300,000
민간							
기타	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합계		3,850,000	3,850,000	3,850,000	3,850,000	3,850,000	19,250,000

5. 작성자 : 농업기술원 생활지원과 정성옥(320-024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향토음식전문인력양성 : 30,000,000 × 10개시군 = 300,000,000
- 향토음식교육 : 50,000,000 × 1개소(농업기술원) = 50,000,000
- 교육관건립 : 500,000,000 × 1개시군 = 500,000,000
- 향토음식창업지원 : 150,000,000 × 20개소 = 3,000,000,000

【관련법령】

■ 식품산업진흥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9, 2011.7.21>

제17조(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·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,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·지도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농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수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5, 2011.3.9, 2013.3.23>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·보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조리과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1.14, 2013.3.23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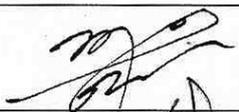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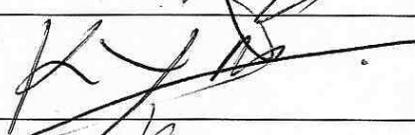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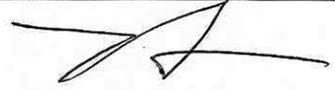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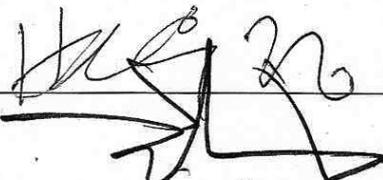
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해당부서 검토의견서(농업기술원)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견
농업기술원 생활지원과	제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향토음식을 소득자원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지원, 육성○ 우리음식연구회 등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,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 <p>→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 및 한식세계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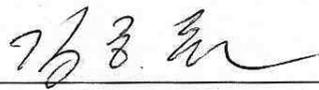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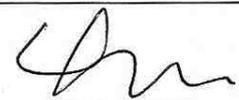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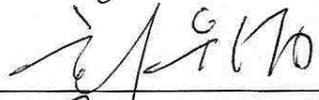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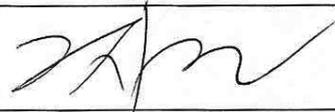
발의자 서명부

(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권영광		
박광선		
권영백		
차광배		
강영석		
한강하		
(공공권)		

찬성자 서명부

(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박진현		
김종찬		
이광		
서희우		
김용수		
서정숙		
심재규		
배수홍		
이태직		
장영석		
최우성		
김명준		
주자근		
이영식		

찬성자 서명부

(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의 원 명	서 명	비 고
고 우 현	이민	
황 이 귀	이민	
홍 진 누	이민	
노 기 욱	이민	
박 권 현	이민	
나 기 보	이민	
한 재 석	이민	
홍 재 현	이민	
최 위 성	이민	
박 태 환	이민	
김 수 응	이민	
김 영 기	이민	
한 재 현	이민	
박 기 진	이민	